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40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의자 : 채현일 · 전용기 · 정준호

김한규 · 김영환 · 이주영

오세희 · 이정문 · 유동수

김남근 · 진성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시설·시험생산시설 등 다른 산업용 건축물에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한 제도인 산업단지 관련 규정 역시 과거에는 공장용 건축물 등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적용 대상 업종의 제한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되어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 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u>공장을</u> 신설 ·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 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 ----- ----- ----- ----- -----. 1. (현행과 같음) 가. <u>산업용 건축물등</u> ----- ----- ----- ---
1. (생 략) 가. <u>공장을</u> 신설 · 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 다.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2. (생 략)	2. (현행과 같음)